

수당 등 지급기준

구 분	지급대상	지급기준
초과근무수당	실무수습 중인 채용후보자 등	① 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5조에 따른 시간당 지급단가를 준용하여 지급 ②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: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채용후보자 등
	교육훈련 중인 채용후보자 등 (실무수습 도중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	① 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5조에 따른 시간당 지급단가의 80%를 적용하여 지급 ②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(1개월 미만 교육훈련에 한함) :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채용후보자 등
정액급식비	모든 채용후보자 등 (실무수습, 교육훈련)	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8조의 지급액을 준용
가족수당	실무수습 중인 채용후보자 등	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0조의 지급액을 준용
명절휴가비	실무수습 중인 채용후보자 등	설날 및 추석날 현재의 월봉급액(임용예정 직급 1호봉) × 60%
연가보상비	실무수습 중인 채용후보자 등	① 지급대상 : 지급기준일 현재 1개월 이상 실무수습 중인 사람 ② 지급시기 : 실무수습 종료시점 ③ 지급기준 : 월봉급액(임용예정 직급 1호봉)의 86%×1/30×연가보상일수 - 연가보상일수 · 실무수습 재직기간이 12개월인 채용후보자 $\text{연가보상일수} = \text{미사용연가일수} \times \frac{\text{실무수습 기간(개월)}}{12\text{개월}}$ · 실무수습 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채용후보자 $\text{연가보상일수} = \text{미사용연가일수}$ - 미사용연가일수 : 지급기준일 현재 이 지침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에서 사용한 연가일수를 공제한 일수 - 실무수습 기간 : 실무수습 정지, 1개월 이상 교육훈련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하여 개월수로 환산,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하되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음(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절상)
직급보조비	실무수습 중인 채용후보자 등	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5의 직급별 월 지급액을 준용
특수지근무수당	실무수습 중인 채용후보자 등	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2조에 따른 지급액을 준용
위험근무수당	실무수습 중인 채용후보자 등	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에 따른 지급액을 준용
특수업무수당	실무수습 중인 채용후보자 등	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4조에 따른 지급액을 준용